사 업 명

(21) 내일배움카드(일반)(1131-3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0] મી જી ત્રી	고용노동부	직업능력정책국		080	08D
명칭	일반회계	工名工名子	4154844	-	사회복지	고용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0
명칭	직업능력개발	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	내일배움카드(일반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0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	2023년 예산	2024년		증감	
71 म उ	결산	본예산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내일배움카드(일반)	322,799	518,815	584,906	584,906	66,091	12.7

4. 사업목적

- (첨단사업·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) 민간 혁신훈련기관,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,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·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- (돌봄서비스 특화훈련) 노인돌봄,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·제도적으로 양성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체계적 관리
- (일반고 특화훈련)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- (평생크레딧)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초훈련 등 지원
- (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지원) 신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분석 도출 및 관계 부처 인력양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 지원 등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: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」제12조, 제15조, 제17조 및 제18조

제12조(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,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, 훈련과정의 요건, 훈련수당,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(이하 "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"이라 한다)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국가경제의 기간(基幹)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
 - 2. 정보통신산업 · 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
 - 3.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
 - ②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, 훈련대상, 훈련과정의 요건, 훈련수당,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7조(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)**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 - 1.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
 -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
 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
 - 2.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·내용·절차·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(이하 "직업능력개발계좌"라 한다)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(이하 "계좌적합 훈련과정"이라 한다)에 대한 정보 제공
 - 2.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
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·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,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, 직업 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,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추진경위

- o '98년 실업자의 (재)취업을 촉진하고자 취·창업훈련 및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취업유망분야 훈련 실시
- '08.9월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도입

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

- 공급자(정부, 훈련기관) 중심
- 고용센터 훈련상담 미실시
- 배정물량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훈련생

직업능력개발계좌제

- 수요자(실업자, 기업) 중심
- 고용센터 훈련상담 실시
- 훈련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스스로 적합훈련과정 선택·수강
- ㅇ '11년 계좌제 훈련 전면 실시(물량배정방식 실업자훈련 폐지)
- o '15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방식 통합

 \Rightarrow

- '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→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(일반회계), 전직실업자 등능력개발지원(고보기금), 근로자능력개발지원(고보기금) 사업 간 통·폐합
- ㅇ '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본사업 시행
- '22년 「K-디지털 크레딧」(고보기금)을 「평생크레딧」(일반회계)으로 이관 및 사업 확대·개편

6. 주요내용

① 사업규모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
- 사업기간 : '98년 ~ 계속

-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(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
사업비	106,069	297,934	426,290	518,815	584,906

- 기타: '23년 훈련규모 258,380명

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- 사업시행주체 : 고용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

- 사업 수혜자 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 ·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고용부·심평원

고용센터

○ (첨단산업·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) 훈련과정 선정 → 훈련생의 국민내 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 참여 → 훈련비 등 지급 훈련과정 심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선정 훈련 실시 훈련비 등 지급 계획 공고 발급 고용부·심평원 고용부·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·훈련기관 고용센터 o (돌봄서비스 특화훈련) 노인 돌봄,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·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 지원 훈련생 모집 훈련비 및 동일직종 취업 및 훈련과정 훈련비 환급 심사·선정 및 훈련실시 장려금 지급 6개월 근속 고용부·심평원 훈련기관 고용센터 <환급기준> 고용센터 o (일반고 특화훈련)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련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훈련과정 선정 및 훈련비 등 지원 재학생 대상 적한훈련과정 훈련생 훈련과정 훈련비 등 훈련수요 조사 ⇨ 심사·선정 모집·배정 운영 정산·지급 시·도 교육청 시·도 교육청 고용부·심평원 훈련기관 고용노동부 ○ (평생크레딧) 훈련과정 선정 →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→ 훈련비 등 지급 훈련과정 관리 훈련과정 선정 훈련 비용·수료 훈련비 등 훈련 국민내일배움 공고·심사 실시 모니터링 처리 지급 카드 발급 훈련생. 한국산업 하국

훈련기관

인력공단

고용정보원

고용센터